

제410회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9월7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4)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1)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0)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1)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0)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0)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1)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4)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3)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2)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8)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9)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5)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5)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1)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3)
1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49)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2)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8)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7)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4)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3)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1)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7)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1)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4)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9)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6)
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1385)

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8)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5)
3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3)
3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6)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5)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0)
3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6)
4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4)
41.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8)
42.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2)
4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6)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3)
4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9)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5)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8)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0)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9)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3)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3)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1)
5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6)
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7)
5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7)
5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6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3)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3)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1)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3)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5)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7)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7)
6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1)

6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5)
70.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1)
7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0)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4)
7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1)
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8)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5)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7)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4)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7)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0)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2)
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9)
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6)
8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3)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7)
8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1)
8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8)
8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4)
8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17)
89.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4)
9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7)
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9)
9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1)
9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3)
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7)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4)
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3)
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8)
99.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1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2)
1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4)
10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5)
1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9)
10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8)
1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6)
10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5)
1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0)
10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4)

10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9)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5)
1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7)
1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7)
11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8)
1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1)
11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0)
1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8)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2)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6)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0)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0)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9)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6)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1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12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12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6)
1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5)
1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1)
1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7)
13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13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8)
1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
13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4)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0)
1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6)
13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095)
137. 부전-마산선 사고현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 위한 비용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엄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4)
138.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1)
139.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2)
140.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7)
141.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1)
142.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1)
143.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8)
144.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0)
145.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6)
146.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6)
147.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6)
148.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3)
149.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1)

150.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4)
151.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1)
15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8)
153.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1)
154. 교통기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5)
15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5)
156.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3)
157.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0)
158.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7)
15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6)
16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46) 철회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4) … 13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1) … 13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0) … 13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1) … 13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0) … 13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0) … 14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1) … 14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4) … 14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3) … 14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2) … 14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5) … 14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8) … 14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9) … 14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5) … 14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5) … 14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1) … 14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3) … 14
1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49) … 14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2) … 14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8) … 14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7) … 14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4) … 14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3) … 14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1) … 14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7)	14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1)	14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4)	14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9)	14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6)	14
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5)	14
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	14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8)	14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	14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5)	14
3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3)	14
3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6)	14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5)	14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0)	14
3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6)	14
4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4)	14
41.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8)	14
42.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2)	14
4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6)	14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3)	14
4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9)	14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14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5)	14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8)	15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0)	15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9)	15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3)	15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	15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	15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3)	15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1)	15
5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6)	15
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7)	15
5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7)	15
5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15
6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3)	15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3)	15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1)	15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3)	15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5)	15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7)	15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7)	15
6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15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1)	15
6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5)	15
70.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1)	15
7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0)	15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4)	15
7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1)	15
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8)	15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5)	15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7)	15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4)	15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7)	15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0)	15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2)	15
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9)	15
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6)	15
8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3)	15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7)	15
8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1)	15
8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8)	15
8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4)	15
8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17)	15
89.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4)	15
9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7)	15
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16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9)	16
9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1)	16
9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3)	16
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7)	16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4)	16
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3)	16
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8)	16
99.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16
1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2)	16
1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4)	16
10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5)	16

1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9) …	16
10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8) …	16
1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6) …	16
10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5) …	16
1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0) …	16
10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4) …	16
10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9) …	16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5) …	16
1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7) …	16
1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7) …	16
11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8) …	16
1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1) …	16
11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0) …	16
1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8) …	16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2) …	16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6) …	16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0) …	16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0) …	16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9) …	16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6) …	16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	16
1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	16
12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	16
12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6) …	16
1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5) …	16
1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1) …	16
1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7) …	16
13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	16
13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8) …	16
1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 …	17
13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4) …	17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0) …	17
1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6) …	17
13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095) …	17
137. 부전-마산선 사고현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 위한 비용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엄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4) …	17
138.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1) …	17
139.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2) …	17
140.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7) …	17
141.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1) …	17
142.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1) …	17
143.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8) …	17

144.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0) ...	17
145.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6) ...	17
146.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6) ...	17
147.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6)	17
14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3)	17
149.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1)	17
150.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화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4)	17
151.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1)	17
15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8)	17
153.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1) ...	17
154. 교통기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5)	17
15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5)	17
156.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3)	17
157.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0)	17
158.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7)	17
15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6)	17
16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46) 철회동의의 건 ...	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4) ...	23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1)	23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0)	23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1)	23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0)	23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0)	23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1)	23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4)	23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3)	23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2)	23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5)	23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8)	23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9)	23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5)	23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5)	23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1)	23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3)	23
1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49)	23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2) ...	23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8)	23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7)	23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4)	23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3)	23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1)	23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7)	23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1)	23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4)	23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9)	23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6)	23
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1385)	23
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	23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8)	23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	23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5)	23
3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3)	23
3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6)	24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5)	24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0)	24
3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6)	24
4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4)	24
41.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8)	24
42.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2)	24
4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6)	24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3)	24
4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9)	24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24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5)	24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8)	24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0)	24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9)	24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3)	24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	24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	24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3)	24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1)	24
5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6)	24
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7)	24
5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7)	24
5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24

6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3)	24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3)	24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1)	24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3)	24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5)	24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7)	24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7)	24
6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24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1)	24
6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5)	24
70.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1)	24
7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0)	24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4)	24
7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1)	24
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8)	24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5)	24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7)	24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4)	24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7)	24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0)	24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2)	25
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9)	25
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6)	25
8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3)	25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7)	25
8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1)	25
8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8)	25
8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4)	25
8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17)	25
89.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4)	25
9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7)	25
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25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9)	25
9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1)	25
9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3)	25
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7)	25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4)	25
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3)	25
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8)	25

99.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25
1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2) ..	25
1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4) ..	25
10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5) ..	25
1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9) ..	25
10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8) ..	25
1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6)	25
10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5)	25
1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0)	25
10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4)	25
10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9)	25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5)	25
1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7) ..	25
1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7) ..	25
11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8)	25
1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1)	25
11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0)	25
1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8)	25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2)	25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6)	25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0)	25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0)	25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9)	26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6)	26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26
1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26
12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26
12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6)	26
1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5)	26
1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1) ..	26
1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7) ..	26
13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26
13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8)	26
1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	26
13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4)	26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0)	26
1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6)	26
13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095)	26
137. 부전-마산선 사고현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 위한 비용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엄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4)	26
138.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1)	26
139.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2)	26

140.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7) …	26
141.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1) …	26
142.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1) …	26
143.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8) …	26
144.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0) …	26
145.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6) …	26
146.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6) …	26
147.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6) …	26
14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3) …	26
149.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1) …	26
150.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4) …	26
151.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1) …	26
15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8) …	26
153.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1) …	26
154. 교통기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5) …	26
15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5) …	26
156.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3) …	26
157.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0) …	26
158.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7) …	26
15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6) …	26
○ 현안질의 …	29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청원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출석하여야 하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23년도 국제공항 협의회 참석을 위하여 전형욱 인프라본부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를 위해서 이종우 본 부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4)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1)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0)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1)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0)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0)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1)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4)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3)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2)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8)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9)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5)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5)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1)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3)
1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49)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2)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8)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7)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4)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3)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1)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7)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1)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4)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9)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6)
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5)
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8)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5)
3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3)
3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6)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5)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0)
3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6)
4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4)
41.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8)
42.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2)
4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6)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3)
4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9)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 번호 2121555)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8)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0)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9)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3)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3)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1)
 5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6)
 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7)
 5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7)
 5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6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3)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3)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1)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3)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5)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7)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7)
 6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1)
 6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5)
 70.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1)
 7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0)
 72.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4)
 73.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1)
 74.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8)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5)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7)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4)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7)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0)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2)
 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9)
 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6)
 8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3)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7)
 8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1)
 8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8)
 8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4)
 8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17)
 89.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4)
 9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617)

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9)
9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1)
9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3)
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7)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4)
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3)
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8)
99.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1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2)
1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4)
10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5)
1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9)
10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8)
1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6)
10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5)
1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0)
10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4)
10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9)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5)
1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7)
1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7)
11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8)
1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1)
11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0)
1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8)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2)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6)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0)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0)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9)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6)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1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12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12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6)
1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5)
1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1)
1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7)
13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13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8)

1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571)
13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494)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900)
1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716)
13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095)
137. 부전-마산선 사고현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 위한 비용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엄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4)
138.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761)
139.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412)
140.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077)
141.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471)
142.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81)
143.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168)
144.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법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920)
145.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376)
146.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176)
147.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366)
14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583)
149.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651)
150. 북방경제협력에 위한 강화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754)
151.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 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151)

15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238)
153.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법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911)
154. 교통기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2114125)
15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285)
156.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313)
157.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670)
158.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067)
15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026)

○위원장 김민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9항까지 총 15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소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병철 의원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님, 민주당 최인호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입니다.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장의 영역이자 남해안권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여 동서 화합을 공고히 할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남해안권은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동·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개발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남해안권이 대양을 향해 나아

가는 전진기지이자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해서 남해안권의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두어 남해안권 개발의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의 감면, 보조금 교부, 토지·건물 등의 특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 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제안해 드린 바와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법안은 풍부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유산을 보유한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저를 포함하여 총 12인이 함께 발의했으며 남해안권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권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해 수 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 수준급의 자연 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을 보유한 핵심 경제·관광의 거점입니다.

그동안 남해안권을 수도권과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국가 발전과 균형 성장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연 자원에 대한 활용,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지역

의 주요 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인재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규정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에 이전지역의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되는 반면에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지역인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전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에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자인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여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 학창시절을 오롯이 보낸 사람을 그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똑같이 지역인재로 인정해 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잠시 이탈하더라도 해당 지역으로 다시 귀향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바다를 향해 나아가다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말입니다. 속칭 연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전지역 대학생들의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그 지역 출신 인재들의 귀향까지 촉진하게 되어 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저희 방 인턴 비서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지역인재를 그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중을 현행보다도 높이면서 일부는 지역대학인재를, 일부는 지역향토인재 즉 고향으로 회귀하는 인재들을 위해 조정한다면 지역대학 활성화라는 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법안 취지를 살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91항 및 제11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배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배준영 의원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오늘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공항소음방지법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항들은 주요 거점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껏 공항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단순히 운송 거점 수단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공항을 단순한 항공교통 이용시설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의 산업

경제 거점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관 산업생태계로 확대·발전시켜 활력을 잃은 국내 공항들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개발의 마중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고 국토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공항경제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인허가의 제 및 세제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을 거점으로 한 특색 있는 개발을 통해 지역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지정하고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 부담금을 징수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 또는 소득증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소음 피해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복수의 법안들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올해 2월 확정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해당 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항공 정비산업에 대한 출자·출연이 불가하여 해외 정비로 인한 국부 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및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도 추가로 규정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제88항 및 제126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징역 등의 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미만의 사람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조기 자립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펴서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 총 8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84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침수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법창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인명구조와 탈출을 어렵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건축설비 등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축물 이용자 및 거주자의 재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안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일부 행위에 적용되던 경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법규의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과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인지 등을 해당 법규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을 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예외적·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가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이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로 통합하려는 내용으로서 현행 2개의 제도가 목적·적용대상 등이 동일한 점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른바 상가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어서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또한 상가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분할 전 소유자인 1인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상가 등의 구분소유권 분할을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 김민철 의원안과 김태년 의원안 그리고 정동만 의원안은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의무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각 개정안에 따른 우선 양도 등의 도입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제고 필요성과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135항까지 법률안 51건과 의사일정 제136항의 결의안 1건, 의사일정 제137항의 청원 1건에 대해서 장지원 전문위

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51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최인호 의원안은 대규모 복합공사로 공사 난도가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종합적 사업관리의 정의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관리 등 안전과 편의 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현재 유사한 내용의 우리 위원회 대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제정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배준영 의원안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단체에게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에서 이를 반드시 수익계약으로만 진행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점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점용·사용료를 제외하여 관련 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호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향후 교통세 세입 규모의 축소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양경숙 의원안, 이인영 의원안은 대중교통에 택시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노선과 운행시간계획을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일반적 정의에 택시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기존 유사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으며 택시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수진 의원안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신청 시에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이미 수립토록 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과 중복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정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동탱크저장소의 등록·변경·이전 및 말소 등 그 처리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없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민기 의원안은 자동차의 하자추정기간을 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로 변경하여 소비자 후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하여 성능인증제와 운행승인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기술을 선도하고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성능인증과 운행승인을 하기 위한 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과 운행승인을 위한 기준 등은 안전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개략적인 범위를 설정한 후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연령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도 철도운전면허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 시

험 응시 단계에서의 연령 결격사유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연령 하한선을 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대식 의원안은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 등의 안전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38항부터 제159항까지 총 22건의 제정 법률안은 신속한 소위 심사를 위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6항까지, 의사일정 제138항부터 제159항까지의 법률안 157건과 결의안 1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37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60항의 법안 철회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6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46) 철회동의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60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 의안에 대

하여 발의자인 배준영 의원 등 5인으로 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부를 통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법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0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4)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1)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0)
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1)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0)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0)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1)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4)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3)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2)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8)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9)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5)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5)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991)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3)
1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49)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2)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8)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7)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4)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3)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1)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7)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1)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84)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9)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6)
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5)
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8)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5)
3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3)

3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6)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5)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0)
3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456)
4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774)
41.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8)
42.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62)
4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6)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3)
4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9)
4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4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1555)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8)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0)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9)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3)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0)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43)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1)
5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446)
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7)
5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7)
5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6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533)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3)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1)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3)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5)
6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7)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7)
6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1)
6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5)
70.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1)
7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2880)
72.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4)
73.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1)
74.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8)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415)
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437)
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554)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977)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22160)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292)
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09)
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36)
8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3)
8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7)
8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1)
8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8)
87.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4)
8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417)
89.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4)
9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617)
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935)
9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899)
9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1)
9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383)
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7)
9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4)
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3)
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8)
99.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1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2)
1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1634)
10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1655)
1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1709)
10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2798)
1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796)
10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975)
1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530)
10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744)
10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749)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5)
1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7)
1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57)
11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398)
1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571)
11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0)
1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8)
1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2)
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6)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760)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0)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9)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6)
1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1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12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
12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6)
1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5)
1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1)
1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7)
13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13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8)
1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
13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4)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0)
1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6)
13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095)
137. 부전-마산선 사고현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 위한 비용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엄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4)
138.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1)
139.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2)
140.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7)
141.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1)
142.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1)
143.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8)
144.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20)
145.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6)
146.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6)
147.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6)
14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3)
149.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1)
150. 북방경제협력에 위한 강화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4)
151.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 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1)
15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8)
153. 주택·공장 화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1)
154. 교통기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5)
15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5)
156.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3)
157.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0)
158.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7)
15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6)
- (10시39분)

○위원장 김민기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김민철 위원** 이 법안 관련된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이따가 자료 요구 현안질의 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잠깐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안 대체토론 이후에 현안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박상혁 위원** 대체토론 하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예, 그렇게 하시지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손을 드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은 5분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율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양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 11일에 저희 지역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과호흡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확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안전요원 배치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하철 역사에 현재도 119구급대원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김포골드라인에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대책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상혁 위원**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고 신규 노선예타도 하고 있지만 건설 시간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살펴보니 근거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도시철도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운영자로 하여금 열차 내와 역사, 역 시설의 혼잡도를 정기 측정하고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 대책을 시행할 때 저는 열악한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혼잡도가 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철도 건설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안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 이것이 체계상 모든 철도에 필요한 만큼 철도안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 문제는 균형발전 등 종합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도시철도법에 넣을지 철도안전법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철도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한 심각성 그리고 시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더욱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지자체에만 맡겨 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법에 임해 주었으면 한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법안을 제안하신 위원님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혼잡도에 관한 안전 문제는 국토부 고시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혼잡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정부 지원이라는 형태로 법에 못을 박았을 때는, 위원님도 전문위원이나 정부의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라는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체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라는 것은 원칙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통과해야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정부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저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수도권 주변의 많은 신도시들은 신도시 자체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부동산 문제로 이주하게 됐고 그것을 발표하고 한 것도 바로 국토부와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 문제가 단순한 문제로 형식적으로, 도시철도니까 지자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이 도시가 생겨난 연원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종합적이고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함께 이 법안을 심사할 때 그런 점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제가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LH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복지관이라든지 주민공동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데 복지관을 예를 들면 이미 한 35년 30년 이상 지난, 복지관 건물들이 너무 노후해져서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실제로 소유는 LH가 하고 구청이나 기초단체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위탁을 준 위탁 법인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이런 약간 3자 간의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그 어느 주체도 비용 투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

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의 열악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서로 핑퐁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어쨌든 소유 주체인 LH가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해서 특히나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운영 자체야 기초단체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복지법인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LH에서 일부 책임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비용 부분에 대한 책임 이슈들이 있다 보니 국토부하고 LH하고도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유하지 않은 기초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복지관을 운영하거나 다른 어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주체들도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법안 논의 과정 이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대안을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혹시 좀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할 텐데, 대신 건축물이라는 것은 준공되는 순간부터 노후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관리 주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재난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구조 안전을 통해 가지고, 실제 노후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구조 안전을 위한 이런 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LH가 부담할 여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량은 구분된 특화된 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 상정된 법안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기 예,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대체토론 하십시오.

○김정재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종합건설 그리고 또 전문

건설 사이에 협의할 사항들이 많다는 거는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저희가 상정은 하는데 논의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우리 정부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논의하기로 여야 합의했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안질의

(10시59분)

○위원장 김민기 다음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잠깐만요.

현안질의는 신청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손을 많이 드시는데요.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민철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김민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드셨지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서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므로 질의 순서……

○홍기원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러니까 질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장관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지금 신칸센에 깔려 있을 법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이런 책자가 KTX와 SRT에 깔려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이렇게 해서 이 리플릿을 9월 1일부터 7일까지 KTX에 6만 5000부, SRT에 1만 5000부 등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대체 KTX입니까, 신칸센입니까?

얼마 전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유튜브를 만들더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KTX와 SRT에 이런 책자를 배포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을 항상 ‘괴담, 괴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학보다는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대통령 영부인 아닙니까?

저는 거기다가 장관님이 도지사 시절에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앞장서서 막겠다고 하셨던 그런 분이 지금 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막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토부 산하의 KTX SRT에 이런 것들이 깔릴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방조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유경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위원장 김민기 잠깐만요,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박상혁 위원 또한 KTX와 SRT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적극 행정으로 막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위원장 김민기 이따가……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관에 경고를 해 주셨으면 한나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나면 결국 의사진행발언이네요

○위원장 김민기 결국은 의사진행발언이네요.
(웃음소리)

○박상혁 위원 저는 항상 본질에 충실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야당의 초선 위원님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교묘하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박상혁 위원님은 저에게 엄중 경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박상혁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제가 보기에 이건 현안질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다른 중요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기 그래서 현안질의 중에 또 다른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KTX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코레일 사장님이나? 오늘은 대상이 아니군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물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있으면.

지금 코레일에 K-공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X에 6만 5000부 그다음에 SRT에 1만 5000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마도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신칸센에서나 볼 수 있는 홍보물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절차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지금 의사진행발언 말고 자료 요청하실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님과 홍기원 위원님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간단히 하십시오.

○김민철 위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사업비 관련된 것은 바로 도로공사 측에서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교통 수요량 관련해서는 용량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걸 한번 방법을 찾겠다 했는데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타안과 대안이 이렇게 나온 비교 분석한 자료 같은 경우도 당시 때는 얼마 걸리지는 않는데 바로 공사비만 관련해서 비교 분석해서 보내 주기로 했던 자료도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시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에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서 용량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런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지난 8월 30일, 또 우리 국토부 원희룡 장관께서도 자료 있는 건 그대로 다 보내 주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국장, 과장, 도로공사 관련해서 이런 지시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지시를 어긴 공무원에 관련해서도 주의를 주시든 경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김민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다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저도 지난 8월 30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작년 11월에 작성된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보고서상의 예타안 또 국토부 최적안 그리고 수청IC가 추가된 예타안의 대안 노선에 대한 교통량 분석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에 대해서 도로국장은 ‘타당성 보고서상의 교통량 자료가 아니라 별도의 교통 분석 부분에 있어서 예타안과 대안의 교통량 분석 차이를 참고해서 노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장관님께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예타 보완안에 대한 것도 자료가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공개된 자료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그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국장이 장관께 보고 근거로 사용했다는 교통량 분석 자료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자료 요청입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 사용자가 급증하자 2021년에 정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에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난 오는 10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해서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구요.

그런데 용도 변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그간 1000여 가구만 오피스텔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 등록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거주자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요.

첫째로는 전체 생활형 숙박시설의 현황 자료 몇 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세대수 중에서 숙박업으로 등록한 세대수, 셋째로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신청한 세대 및 용도 변경이 인정된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다 하셨지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대로 하려고 했더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손드는 순서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 놓고 손을 안 드시면 제가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민홍철 위원 미리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우선 민홍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책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박상혁 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하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오늘 SRT 사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혹시 철도국장은 나와 계시지요? 안 나와 계셔도 됩니다, 2차관이 계시니까.

지금 SRT에서 경전선 지난 9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네 편이지요? 오전 두 편, 오후 두 편. 그렇지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민홍철 위원 다행스러운 어떤 조치가 돼 있어서 상당히 경남, 서부 경남이나 동부 경남 지역에 대한 철도 편의를 어느 정도 숭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됐는데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연구는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경전선 철도를 어떻게 하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갈 수 있겠느냐, 유일하게 지금 경남 지역만 일종의 고속철도 소외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남부내륙철도가 착공이 되면 서부 쪽으로는 조금 숭통이 트이니

다마는 여전히 경남 동부 쪽은 철도 소외 지역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가 부전-마산선 복구 언제 끝납니까? 지금 현재 부전-마산선 거기에서 사상 구간 SK가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개통 시점이 2년 이상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민홍철 위원 그게 언제쯤 복구가 돼요? 아까 청원도 올라왔던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내년 연말이라고 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3년이 늦어져 버렸는데, 물론 시공사도 엄청난 손해와 구상권 행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지금 지연되므로 동남권의 교통망이 상당 애로가 있고요.

더불어서 경남에서나 부산에서 요구하는 게 부전-마산선이 개통이 됐을 때 전동차를 투입해 달라, 그것 투입을 하되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 달라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홍철 위원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지금 복구 비용도 1조 원대라서 고민이 많습시다마는 공사를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熙國 위원 강희업 대광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을 두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있고 대광위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노선 결정 문제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나 93년도 경부고속철도나 서울-양평이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올 오어 너썅(all or nothing) 게임처럼 돼 버리는데, 지금 대광위는 시한을 정해 놓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한은 안 정하고 최대한 빨리 합의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정하지는 않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저는 그런 태도에 대단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 간의 합의는 불가능하지요. 대광위원회나 또 국토교통부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 대광위가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오고 내년 봄이 오더라도 결정을 안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한다면 거의 직무유기나 책임 회피로 몰릴 우려가 큼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2차 대전을 끝낸 영웅 해리 트루먼의 책상에 놓여 있는 표가 더 벅 스탱스 히어(The Buck Stops Here)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준 선물이 더 벅 스탱스 히어지요. 적어도 단풍이 들기까지는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기를 요구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잘 알겠습니다.

○**金熙國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뒤에 박정하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맹성규 위원** 저것 띄울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민기** 아, 그래요? 그러면……

○**맹성규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장관님, 서울-양평고속도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고, 이것 우리가 정쟁으로 삼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오픈된 마인드로

보시고 국정감사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도로공사 3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6일 날 도로공사가 처음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고받는 사람은 도로 설계처장을 비롯한 도로 설계팀이 다 참석을 해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견 제시도 없어요 도로공사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로공사가 사전보고 받았는지도 지금 의구심이 들지만 자기들이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없이 그냥 보냈니다.

그리고 16일 날 도로공사 보고하고 24일 날 국토부에 보고를 하는데 담당 부장하고 차장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국토부는 사무관이 혼자 참석을 해서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노선의 55%가 바뀌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장관님은 이것은 과장 전결이라고 하셨는데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이것은 과장 전결이 아니에요. 노선 조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실·국장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왜 문제냐? 5월 24일 이후에 십여 차례 회의를 하고 다 했지만 어떤 서류에도 의사결정을 해서, 이 대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국토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때까지 그 내용을 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공사도 전혀, 의사결정을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국토부도 사무관 혼자 앉아가지고 노선 조정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다음 보세요.

장관님은 1억 원짜리 예타보다 20억 원짜리 타당성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자꾸 몇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KDI에서 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보시면 현장조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B/C 값을 찾고자 노선을 검토합니다.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제출해 준 그 자료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 전수조사해 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라고 해서 20억 원짜리보다 못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타당성조사 자체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 이것 폄하하는 그런 언급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국정감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짚어 보시고 저희들하고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나중에 하시지요.

○위원장 김민기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원주갑 출신의 박정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쭙게요.

장관님, 제가 책자를 확인하지는 못해서 그러는데 KTX SRT에 비치되어 있다는 책자가 매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비치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각종 여행 정보도 있고 정책 홍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K-공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난데, K-공감 아니에요.

○박정하 위원 특별 비치본 저것 제작 과정이나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따가 확인을 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 갖고 제가 대강 알고 있는 것은 몇 년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기구 IAEA와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해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합의해서 결과가 올 초에 나왔던 거고, 이후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홍보해 오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충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코레일이든 SRT든 아니면 국토부든 좀 전에 제가 말씀 죽 드렸던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와 합의해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우리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가 공식 입장인데 그 공식 입장에 대해서 정부 혹은 공공기관 등이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해당되는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이게 특별 방식이든 아니든 그렇게 비치해 놓은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관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정 홍보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본래의 업무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포 회사와 계약에 의해서 비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질문에서도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고 무슨 판결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권위를 갖고 판단한 기구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무 문제가 아직은 없는 거고,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주장하지 않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홍보했던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치한 걸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본연의 비판 기능을 좀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좀 거시기합니다.

○박정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한준호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병욱 위원** 분당울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감기 걸리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병욱 위원**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나 봅니다.

저도 KTX SRT에 비치된 책자 질문 좀 하겠는데요. 저는 권력은 통제받아야 되고 또 절제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겸손해야만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을 밑에서 실행하는 데는 다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 봤을 때 분명히 규정이 있을 거다하고 규정을 찾아보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PT가 준비가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규정 이름이 ‘열차 내 비치 간행물 운영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제가 여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병욱 위원** 아니, 여기 나오시면서 공부하고 나오셔야지요. 당연히 예상 질문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욱 위원** 이 내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공익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의 목적’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공익적인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은 이견이 있을 겁니다. 또 지정장소 비치 기준을 보면 ‘사회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것’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및 정부, 지자체 등의 홍보성 간행물은 원칙적으로 비치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불특정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국민들끼리의 이견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비치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을 K-공감이라는 책자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K-공감도 아니에요. 그냥 별책부록으로 나온 겁니다.

K-공감 사례를 보니까 주로 설, 추석 그다음에 예산안이 통과돼서 예산안 설명 이런 것들이 주로 그동안에 즉 열차에 비치가 됐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들 상당수가 이견을 갖고 있고, 국토위에서는 과학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대량의 홍보물을 KTX나 SRT에 비치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내규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의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든 야든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법과 규칙과 내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 정치인들과 행정가가 지켜 줘야만이 대한민국의 가치가 계속 지속되고 우리 민주주의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코레일 내규 위반인지 아닌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시면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웃음소리)

○**김병욱 위원** 오늘 말씀 너무 안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내일부터 회수한다고 합니다. 원래 회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김병욱 위원** 그런데 일주일간 비치를 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비치 기간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간 비치하고 그 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돼서 내일부터 회수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짧게 비치했으니까 괜찮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병욱 위원** 비치는 잘못했는데 기간이 짧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지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병욱 위원** 검토의견을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위원장 김민기**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한준호입니다.

저는 법안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 텐데 2차관님 그리고 장관님 같이 들어 주세요.

저희가 교통소위에서 철산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가 현재는 코레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철도공단 등 다른 기관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요, 들어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철도공단이 예쁘다고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코레일 측이 예쁘다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국토부 측에 여쭙보고 또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 이겁니다.

저희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라서 현재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그리고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이런 목표로 용역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한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8월 31일로 연장이 되더니 8월 16일에는 잠정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철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차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한준호 위원** 써 있는 것은 봤는데 그 외에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역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법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양측의 입장을, 어느 편을 들어서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주서

야 이 자료에 근거를 해서 과연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수정을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논의를 진행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보스턴그룹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웃풋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하는 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관계기관 간에.

○**한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저희한테 용역 결과를 주시고 그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리고 장관님, 어차피 나온 내용인데 30초밖에 안 남아서……

국정 홍보는 대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찬반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게 정부의 정책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국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열차 내 비치 금지 항목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니까.

혹시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신 겁니까, 비치 내용과 관련된 것?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준호 위원** 지시한 적이 없는데 코레일에 비치가 됐다? 그러면 문체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배포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한준호 위원** 계약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문체부가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민기**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조오섭입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 지역 기사를 봤습니다. 철도

국장님도 계시고 2차관님 계시고 장관님 계시는 데요.

지금 광주 지역에 SRT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SRT가 축소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횟수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양, 8량이 준다는 기사예요.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 날은 8량을 증가를 시키고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은 8량을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철도국장은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지홍 저도 아직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조오섭 위원 그래요? 이게 아침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SRT 쪽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전혀 모르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박지홍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조오섭 위원 그래요? 문제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단정 짓지 마시고요.

○조오섭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열차를 축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특히나 그 지역의 국토교통 위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모르시고 차관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이 기사에 나와서 제가 당혹스럽네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국정감사 기간에 다시 이야기할 내용인데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좀 이상해서, 이상하게 고속도로 문제만 보면 정책 내용이라든가 절차 부분에 있어서 계속 파면 팔수록 좀 이상해져요.

2022년 6월에 고속도로 관련해서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가 나온 것, 여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타당성 노선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환경적 평가만 볼게요.

어떻게 하나면 산지 훼손 최소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훼손 최소화라고 되어 있고 대안1,

대안2, 최적안이라고 되어 있는 현재 안입니다. 산지 훼손 과다,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도 증가로, 2022년 6월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22년 9월에는, 3개월 뒤에는 뭐라고 하나면 기재부 예타안에 대해서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관통 그리고 터널 계획 최소화로 산지 훼손 증가로 되어 있고 검토안, 즉 최적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우회 통과, 적극적인 터널 계획으로 산지 훼손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 국감 때 다시 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도로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사무실로 오서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기 지금 설명 받으실 것은 아니지요?

○조오섭 위원 지금 설명해 주셔도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사무실로 와서 하라 그러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사무실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로 가서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국감 때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조오섭 위원 예, 다시 할 겁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이것은 정치적인 정쟁거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을 일부 야당 쪽에서 자꾸 정치화시켜서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거리니까 그런 데 비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것을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 오죽 답답하면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하는 게 안 맞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저는 모든

메뉴가 다 수산물입니다.

(웃음소리)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민주당은 내로 남불 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야당 위원님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2020년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민홍철 위원 그것은 국가 정책이잖아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 들어 보십시오.

이게 언제적에 배포가 됐느냐 하면 2020년 1월 달에 KTX하고 SRT에 배포가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총선 직전이군요.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총선 직전입니다, 4월 15일 날 총선 직전에. 이 내용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찬양서다. 이 내용 안에 보면……

○민홍철 위원 내년 1월 달에 볼게요.

○서범수 위원 예, 한번 봅시다.

이 내용 안에 보면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홍보 그대로인데요. 이 책자에서 보면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해서 앞으로 몇 달 안 남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것을 버젓이 KTX하고 SRT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런 부분을 홍보 책자를 낸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단 말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느 게 더 문제가 있느냐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때 문제 제기를 못한 야당의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웃음소리)

○서범수 위원 문제 제기를 했지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제가 언론보도에서 찾은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또 고통을 당하는 100만의 수산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국익적인 차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런 면도 있지만 야당의 전투력을 배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되는 대출인데 분양가가 3억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은 이 대출에 의무가입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시세차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최대 50%까지 기금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고정금리 1.3%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토부 홈페이지 그리고 LH 홈페이지에는 대출 조건이 ‘고정금리 1.3’ 이렇게 명시돼 있고 그게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토부랑 HUG가 이 대출금리를 연 1.3에서 1.6으로 인상하는 결정을 했고 8월 말에 실행되는 대출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분들이 2년, 3년 전에 청약할 당시에는 확정적인 고정금리 1.3 그리고 모기지 의무가입 이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청약을 할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건데 막상 대출시기인 입주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금리가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정부에 속았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수백 명이 광화문에서 시위까지 하셨어요.

저는 공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당시에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신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렸거든요. 예금금리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게 지금 쟁점이 뭐냐면 청약이나 사전청약은 한 2, 3년 전에 됐는데 그때 이것 당첨되면 분양받으면 모기지 의무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1.3% 고정금리 이게 고지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이라고 하는 게 좀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8월 전에 입주해 된 아파트들은 1.3%로 대출이 됐고 그것은 고정금리로 진행이 될 건데, 8월 30일 이후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죽 한 6000세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들한테는 ‘아직 대출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금리 변동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변동금리가 고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3년 전에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 여부를 의사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호돼야 되는 대상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소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그 기점으로 옮기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검토하고 있다.

○이소영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맹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PPT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9월 1일 날 우리 결산심사하면서 맹성규 위원님 질의 그리고 위원장님과의 질답을 통해서, 보시면 장관님께서 1억 원짜리 용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했다. 그래서 종점부에 있어서 높은 교량의 위치라든지 접속부 연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억 원짜리 용역에서는 현장에 나가 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발견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조사를 일부 했는데 그 교각 접속부에는 갔다 온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정정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박상혁 위원 넘겨 주시지요.

다행입니다. 보면 그때 제가 예결위 질의 때문에 현장에 없어서 알고도 지금 오늘 질의를 다시 하는데요. 그 당시 예타보고서 152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현장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또한 예타보고서 내용 중에도 이런 현장방문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정하고요. 도로국장이 즉석에서 시정을 해 줘야 되는데 동작이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단 장관님 지금이라도 수정하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결국 이런 거지요.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물어보신 것처럼 현장방문도 했었고 예타나 이번 용역이나 다 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왜 이렇게 없었던,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을 문제로 삼느냐, 이것이 저는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위원님, 제가 10초만 쓰겠는데……

○박상혁 위원 제가 질의 다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여기 형광펜으로 쓰셨네요. ‘본 사업 접속을 고려한 대책은 미반영된 상태로 준공 예정이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현안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예타 당시에 답을 준 바가 있습니다. 기존 교량에는 영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교량 확장 시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답을 썼고, 그래서 그게 예타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타 때 이 문제가 별 문제 없이 양서면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저 문서는 이번에도 다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명확하게 의사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지점들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두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국정감사에서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장관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 도로국장이 답변서를 지금 주길래.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 김민기 아니, 지난번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한테 현장에 안 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 본 게 확인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타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니깐요. 제가 잘못 알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질의가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원주청의 김 국장님 오셨지요, 김호 국장님?

○위원장 김민기 지금 누구 부르신 거지요?

○최인호 위원 김호 국장.

○위원장 김민기 예, 김호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고요.

○최인호 위원 김호 국장님, 시간상 결론만 먼저 묻겠습니다.

용역사로부터 작년 6·7·8월 달에 보고받았던 내용 중에 있었던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를 9월 1일 날 보고받았던 8월 달 보고검토에서 계획이 없는데 왜 넣었느냐는 말을 해서 용역사가 9월 달부터는 삭제하게 된 경위가 됐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했었지요? 상위 고속도로 계획 등이 없었다고, 그래서 했다는 것 맞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최인호 위원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시면 8월 노선 검토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안과 대안1만 나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안의 장점은 사실상 사회적 특징에 있어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 그것 하나뿐이고, 사실은

총 사업비도 대안에 비해서 많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성이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이 사라짐으로써 결론적으로 강상면이 대안으로 결론이 나게끔 하는 데 왜 중요하냐면 두 원안과 대안만 비교하는데서 원안의 가장 큰 장점이 삭제되면 대안의 장점만 부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이 두 가지 안을 보고 용역사의 검토안을, 그 보고서를 검토하면 대안만 결론이 나게끔 하는, 이 균형이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김호 국장이 혼자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지시는 없었고요. 2022년 9월 1일 날 관계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실제로 장래 노선축이라는 말이 있길래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간선도로망계획을 21년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상 제가 자르겠습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그래서 상위계획에 없는 거기 때문에……

○최인호 위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용역사가 장래 노선축 연장 고려라는 장점이 있으면 계획에는 없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계획이라는 게 처음부터 다 모든 게, 지금까지 모든 고속도로 계획을 미리 잡아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라는 것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보고가 되면 앞으로 이런 장점을 살려서 고속도로 네트워크측과의 연결 이렇게 해서 도로망이 자꾸 발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기관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서, 지시 없다가 일단은 그 관점에서 상위계획에 없다는 그 하나만으로 앞으로 장점을 잘 살려 가지고 원래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맞게끔 하는지 검토를 해 보고 일리가 있다 하면 자꾸 살려 가서 계속 비교 검토를 해야지, 그냥 딱 잘라서 이것

없애라, 삭제해라 하나 9월 달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비교만 보면 대안만 딱 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 김민기 최인호 간사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은 또다시 하셔도 됩니다.

질의 마쳐 주시고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기 예, 그러면 국장님은 답변을 큰소리로 하시거나 마이크를 바짝 대시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하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조사는 정부 기본계획상에 있는 노선범위 안에서 과업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 9월 달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고 국가간선도로망, 불과 1년 전에 수립했던 국가적인 전체 노선망을 검토했던 계획입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법적인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실행계획입니다. 실행설계입니다. 설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검토를 하는 것은 과업범위에 벗어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사를 통해서 논의 끝에 그것을 삭제했던 겁니다.

○맹성규 위원 나중에 질의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민기 예, 나중에 또 질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국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반론하거나 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기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순서가 있으니까요.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안 하십니까?

○김정재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희국 위원님 질의합니다.

○맹성규 위원 김호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장관님도 우리 실무자, 차관님 포함해서 국장님들도 지금 이 과정에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가 과연 비상식적이고

정치공세인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도로망계획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참석자가 누구였어요? 그때 사무관이었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 사무관하고 또 누가 참석했습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도로공사 업무 지원자하고요.

○맹성규 위원 지원자 누구, 부장 차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부장이랑 차장입니다.

○맹성규 위원 그러면 보통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사무관하고, 그 당시의 김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부장 차장,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결정한 거잖아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그렇습니다.

○맹성규 위원 국가도로망계획의 9축의 지선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선이 무슨 의미야? 국가도로망계획에 나와 있는 고속도로 9축의 지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9축에 대한 보완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성규 위원 보완 노선이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맹성규 위원 그러면 그 보완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장래의 보완 노선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9축의 지선이라고 했던, 저희가 계획상에 9축의 지선이라고 명명을 했던 이유는요 9축 서울-양평을 개설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춘천-양양에 대한 고속도로 교통이 일부 전환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선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맹성규 위원 어떻게 전환됩니까? 이게 앞으로 그러면 전혀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위계획에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맹성규 위원 김 사무관, 장관님, 보세요.

지금 국토부 의사결정이 얼마나 엉터리로 돼

있나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선변경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하고 상의한 사람 있어요, 위예? 과장이나 국장은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그러고, 과장하고 상의한 적 한번이라도 있어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언제 누구하고? 그러면 자료, 어떤 식으로 상의했는지 기록에 남아 있어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어차피 타당성조사라는 게 최적의 노선대를 찾는 게 답이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언제 보고해.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십여 차례 회의를 했다고 그러고 그 결과물을 달라고 그러면 도면밖에 없다고 그러고, 참석한 누구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다.

그러니까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여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니 그 회의한 참석자와 회의 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 가지고 회의 분명히 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출을 해 줘야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 답을 하면 혼선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다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현재 도로정책과랑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짚어볼 테니까 정확한 어떤 의사결정을,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국토부도 지금 혼선하면 안 되는 게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의사결정한 사람을 알 수가 없단니까, 지금.

우리 사무관께서 혼자 해서 그대로 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누구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 주

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맹 위원님, 저희는 실국장회의도 보고서 없이 합니다.

○맹성규 위원 아니, 좋은데. 보고서 없이 하더라도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그 당시의 실국장이나 장차관은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납득하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안 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熙國 위원 김호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야당 위원님들,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가려운데 구두를 신고 암만 굽어도 그게 시원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국토교통부하고 용역사하고는 첫째 절차가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을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업지시서라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번에 귀하가 수행해야 될 업무의 범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장래 도로망은 과업지시서상 과업 밖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용역사에서 과업 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이것은 과업 밖의 이야기니까 빼고,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나 5개년 고속도로망이나 5개년 국도망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예타를 거쳐 와 가지고 지금 이 예타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대안을 검토해 와라, 이게 과업지시서의 전부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논쟁을 하는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 용역사하고 주무관, 사무관, 과장 간의 업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하고는 실제로 조금 다릅니다. 보통 착수보고를 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착수보고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정리해서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중에 준공 처리할 때 ‘이렇게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하지, 여러분께서 계속 요청하시는 그 자료를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문서로 만들고 그렇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맹성규 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제가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시는데요 어떤……

○위원장 김민기 잠깐만요.

○맹성규 위원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자료 요청이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하실 거예요?

○맹성규 위원 예,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합니다. 질문은 안 하고.

○위원장 김민기 자료 요청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맹성규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조금 이따가, 질의가 한 분……
최인호 간사님 질의하실 거지요, 지금?

○최인호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질의 마치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김호 국장님, 저희 보좌관하고 지난주에 통화할 때, 해외 출장 중이실 때도 그랬고 아침에 저하고 잠시 일찍 만나서도 말씀하신 게 혼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방금 맹 위원님의 질문에는 과장과 상의했다고 했어요. 왜 또 말이 바뀐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그것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노선 변경에 관련해서 그때 5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설계사에서 제안이 왔길래 저희가 조금 더 현황조사를 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자고 해서 6월 달에 과장님께 보고를 드린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이 삭제와 관련해서 의논했다는 게 아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혼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상위 계획이 없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8월 달 보고서에는 장점과 단점을 딱 비교해서 두안만 올라온 겁니다. 맞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예타안과 대안, 양서면 종점과 강상면 종점 딱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장점 단점을 했는데 이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라는 것은 원안의 장점이지요. 그렇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렇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최인호 위원 그러면 장점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토론 한 번도 안 하고, 용역사와 토론 과정도 없이 그냥 삭제하라 하면 삭제되는, 그렇게 국토부가 용역을 수행합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그건 아니었고요. 9월 1일 날 저희가 용역사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우리의 과업을 벗어나는 범위이고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장래 노선축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년 전에 저희가 도로망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제시하는 건 맞지 않다, 그다음에 법적인 계획이 없다 그런 취지로 해서 용역사에서 받아들였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알겠고, 중언부언하니까 내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 기대효과에 보면, 예타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에는 수도권 1순환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경기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이렇게 예타안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미 근거해서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이 이야기하신 답변으로 따지면 예타 결과보고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그것은 예타 보고서……

○최인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여기서 장관님, 장관님이 누차 지금까지 주장했을 때 용역사가 모든 것을 다 주도했다고 했는데 예타안과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것 중에서 예타안의 장점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장단점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대안만 부각되는 아주 변곡점적인 상황에서 용역사의 장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가 사라지게 된 계기가 국토부의 김호, 당시 담당의 지시 때문에 삭제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사가 다 주도했다는 장관님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주장이지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말의 표현을 갖고 자꾸 문제 삼으면 얘기가 끝이 없고요. 용역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돈을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현장조사하고 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사무관이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지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이고, 우리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장관 같은 고위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개입한 바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최인호 위원님, 시간은 다 됐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또 하실 거면 또 하세요.

○김정재 위원 두 번까지만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아직 10분 남았잖아요.

○위원장 김민기 잠깐만요.

3분씩 두 번까지 협의를 한 것은 오늘 본회의가 14시에 예정돼 있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12시 30분 이내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모든 안을 다 포함해서 다시 노선 전문가를 통해서, 노선검증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날 며칠을 밤늦게까지도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저 모든 걸 다 다시 검증하자는데 왜 계속 동어반복을 하시지 이 아까운 시간에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예타안을 누구의 지시로 삭제해서 어느 날 사라졌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의혹의 의혹을 가지니까요. 그러나 제가 양평 주민이라면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우리 지

역에 IC도 없이 그냥 매연만 지나는 다리만, 교각만 있어 지나간다?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속도로 생기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자기 지역의 IC입니다. 심지어는 설계를 해서 다 만들어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가장 많은 민원이 마을에 20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IC 놔 달라, 30가구인데 IC 놔 달라, 그거 안 해주면 다음에 총선 떨어뜨리겠다, 이게 저희가 제일 고통스러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타안이라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은 IC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없었느냐, 이것도 누가 조작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도 영일만대교 3조짜리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타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으려고 합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물론 부정한 일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도 다 좋고 얼마든지 제기하라고 장을 언제든지 열어 드렸습니다만 지금쯤은 위원님들께서 기다리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얼른 민주당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고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성실히 답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회의 자료를, 저희도 위원들끼리 어떤 사안을 놓고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것 할 때마다 보고서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장, 과장들이 이런 자리가 익숙지 않고 답변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없는 것은 '이런이런 것 때문에 없다'라고 정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보면 처음 이런 일을 답변하시는 분들이 조금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베스트 팔러시 이즈 아니스티(best policy is honesty)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이 양평고속도로가 빨리 재개되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이지요?

○맹성규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맹성규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당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되짚어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게 국정조사 방식이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 제가 볼 때는 처음 계약 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다 짚어보고 나서 아마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잘 협의를 해서 방식을 찾으려면 될 것 같고요.

장관님 이하 국토부 직원들한테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자료가 정확하게 공개되었으면 아마 시간적으로나 중복되거나 하는 게 반복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첫째,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제공된 자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기에 너무 허술한 것이 많고, 어떻게 사무관이 도로공사 실무자들하고 모여서 한 것이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책임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 이루어졌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55%가 바뀌었고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땅들이 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처음 계약 단계부터 해서 끝까지 단계별로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이 왜, 최인호 위원이 지적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특 한마디 던져 가지고 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가장 강점이 있던 안이 없어져 버리고, 그게 나중에 조사 단계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이 이제는 단계별로 해서 자료를, 국토부에서 컴퓨터에 다 띄웠다 이러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해서 가지고 서로 논의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는

바뀌는 자료 말고 정확하게 책임 있는 자료를 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맹성규 위원님 자료……

○서범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 맞습니까, 이게?

○맹성규 위원 자료제출,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료제출 맞아요.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지요?

○한준호 위원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에 가까워서, 시간 주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질의하십시오.

○한준호 위원 오늘 사실 본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밀린 법안들 처리도 있고 질의 시간이 3분씩 두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된 질의를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회 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혹이라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은 왜 꺾였냐 그리고 그곳에 왜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있느냐 그리고 산 시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혹들이 일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는 요청들을 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 전문가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면 그 의혹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문가들이 그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해결이 되나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도로를 놓느냐, 어디에 도로를 놓느냐 이 정도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저희가 국정조사 요청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하고 저희들 진짜 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에 필요하면 전문가들이 오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까? 자꾸 전문가 검증위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도저히 국정조사를 여당 측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지요. 그리고 가끔 질의를 하시다가 국정감사 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국정감사까지 갈 일인가, 국정감사 때 논의해야 되는 현안들도 많은데. 이 사안은 별도로 해서 청문회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야 간 사담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 국장님 잠깐만 발언석에 나오세요.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위원장 김민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없었다, 이것이, 잠깐만요.

예비타당성에서는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가 있었고 대안에서는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미고려가 있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용역사에 전화를 걸어서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하는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렇게 전화하신 건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전화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위원장 김민기 회의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매월 진도 보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진도 보고 시에 어차피 그 차트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회의 과정에서 장래축 얘기가 있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불과 1년 전에 국가기간도로망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장래에 필요한 노선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보면 실행설계입니다. 설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는 것은 맞지 않다, 장래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그다음에 상위 계획에도……

○위원장 김민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다 이거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상위 계획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을 했을 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위원장 김민기 그 과업의 범위 밖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과업에는 대안의 발굴은 있습니다만 장래축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러니까 과업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인지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주고 다시 인지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만 주면 이 양반들이 용역사에서 예비타당성 노선 원안대로 갈 것 같아서, 대안1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시시켰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때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사실이 아닌데, 과업지시서를 줘 놓고 나중에 회의하다가 대안노선은 고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 하나 볼게요.

상위 계획에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하면 상위 계획이,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고요.

○위원장 김민기 두 번째 계획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두 번째 계획은 국가……

○위원장 김민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세 번째 계획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그다음에 국가간선도로망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이런 거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실행계획으로서……

○위원장 김민기 그런데 여기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그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 밖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돼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국가도로망, 그 하위계획이지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는, 여기에서는 동서 9축 지선이라는 게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맞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다음에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도 동서 9축 지선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지금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서 9축에 지선으로 표시돼 있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도 있고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의 단위 계획에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장래 노선축 계획은 고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저희가 9축 지선이라고 명명했던 사유는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노선이 동서 9축인데 거기의 일부 구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9축 지선으로 명명을 하였던 겁니다. 반드시 연결되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민기 아니, 지금 그 답변은 제가 묻은 것에 대한 답변과는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지금 여기 국토

종합계획에는 물론 없지요. 연결망 계획 노선 고려가 전혀 없지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도 이 큰 단위, 20년짜리 계획이거든요. 국토종합계획도 20년짜리. 그러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5년짜리 계획이에요. 10년짜리와 5년짜리에서는 9축 지선이라는 게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래 노선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예타안에서는 그 원안으로 됐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사타를 했을 때 1.01이 나왔을 때도 그 노선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타했을 때도 0.82 B/C가 나왔을 때도 그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장래 노선축을 고려했다는 계획으로 들어갔었는데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지 말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것이 배제되고 하나 남았던 대안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들이예요.

그런데 왜 굳이, 계획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됐지만 왜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나서 그랬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 답변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에 대한 답변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토부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처음에 있었을 때 국토부에서 차근차근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 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최인호 간사님 추후에 하시기로 하고요.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오늘 질의를 하셔야 될 분이 안 계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3분짜리 질의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예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철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장관님한테 좀 들어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못 들었는데 자료 다 보내주실 건지……

○위원장 김민기 아니요. 아까 김민철 위원님께 자료를 다 보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권영세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수홍	김정재
김학용	김희국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박정하	서범수	서일준
유경준	이소영	장철민	정동만
조오섭	최인호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청가 위원(2인)

강대식 심상정

○위원 아닌 출석 의원(4인)

강훈식 김희재 배준영 소병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장지원
입법심의관	이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제1차관	김오진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주택토지실장	진현환
교통물류실장	이윤상
항공정책실장	정용식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도로국장	이용욱
철도국장	박지홍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김호
도로관리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상임위원	김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인천국제공항공사인프라본부장	전형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박승기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국토안전관리원경영본부장	이종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이학영·이장섭·임호선·유기홍·이재정·정태호·최혜영·김성환·신영대·김교홍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강대식·이인선·김용판·지성호·박대수·조수진·하태경·유경준·배준영·정희용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최인호·전재수·박상혁·한준호·신정훈·신영대·서영교·안규백·김병기·허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일 회부됨

강북북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박용진·기동민·박홍근·서영교·전용기·박성준·김영배·김영호·전혜숙·고민정·인재근·김성환 의원 발의)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3. 9. 1. 정부 제출)

이상 3건 9월 4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김희국·최영희·金炳旭·김성원·배준영·백종현·임병현·유경준·권명호·지성호·김용판·서범수 의원 발의)

9월 5일 회부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전주혜 · 박정하 · 한무경 · 이채익 ·
이현승 · 유상범 · 조은희 · 김웅 · 유경준 ·
김미애 · 정희용 · 장동혁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강대식 · 이인선 · 김용관 · 이종배 ·
신원식 · 김상훈 · 金炳旭 · 엄태영 · 송석준 ·
조은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6일 회부됨